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

## 외부강의 등 신고 매뉴얼



## 외부강의 신고서 등록 및 신청

외부강의 신고서 메뉴 : AMS-행정-교원-외부강의신고



## 외부강의 사전 신고 준수

##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합니다. (청탁금지법 제10조 2항)

다만, 일부사항 시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사전 신고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. (동법 시행령 26조 2항)

## 사전신고 위반시 주의 화면



